



전월세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2019년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외지역)
1인가구	233,000	201,000	163,000	147,000
2인가구	267,000	226,000	178,000	161,000
3인가구	316,000	272,000	213,000	194,000
4인가구	365,000	317,000	247,000	220,000
5인가구	377,000	329,000	258,000	229,000
6인가구	441,000	389,000	296,000	267,000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넓은 집은 고쳐드립니다! (자가가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노후도 평가항목]

구조안전	기초 및 지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등
설비상태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	벽,천장,바닥,문틀 및 문짝 마감 등

[2019년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경보수 378만원 수선주기 :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702만원 수선주기 : 5년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026만원 수선주기 : 7년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	--

드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with L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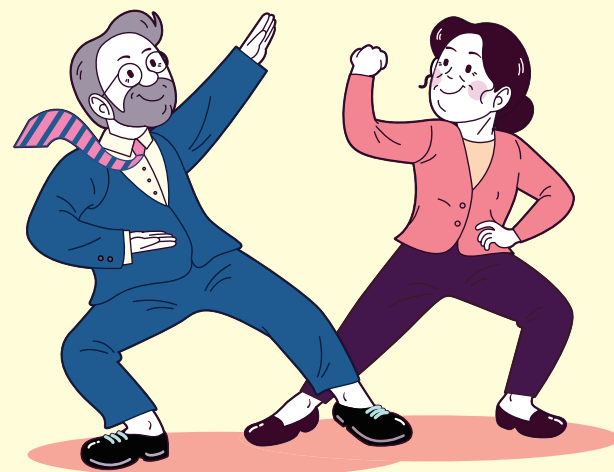
주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
www.bokjiro.go.kr



힘이되는 주거급여 제도 쉽게 알아보기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집은 고쳐드립니다!



국토교통부 LH

2019.5



주거급여제도란?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임차가구)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지원(자가가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약 203만원)이하 가구

[2019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
(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신청장소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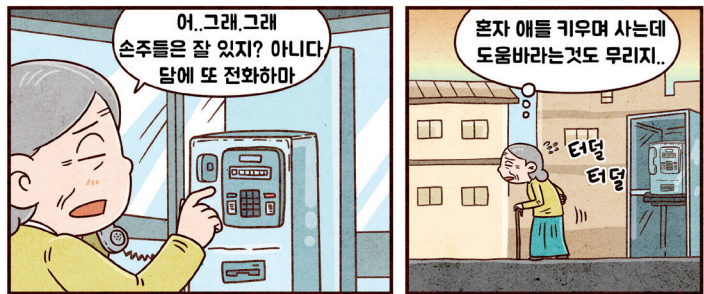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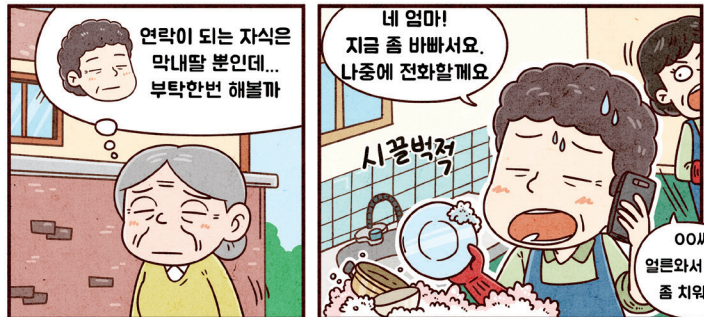
자가진단

마이홈 홈페이지 (myhome.go.kr)에서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 을 활용하여 확인가능

문 의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정말 알아두면 쓸모있는 주거급여



주거 급여 안내문

